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예방접종피해보상등에관한
특별법
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0928호, 2025. 4. 22. 공포, 2025. 10. 23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(안 제2조)

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,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, 그 밖에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인정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.

나.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(안 제3조)

- 1)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상청구서류를 제출하도록 함.
- 2) 피해보상청구서류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.

3)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을 통해 이를 통보하고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함.

다. 피해보상의 지급기준(안 제4조)

진료비·간병비, 장애일시보상금 및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의 금액을 정하여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.

라.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(안 제5조)

1)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중에서 유관기관에서 업무 수행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정함.

2) 「의료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사,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단체, 예방접종 및 피해보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여 관련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정함.

마.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(안 제6조 및 제7조)

1) 심신장애·직무 관련 비위 등이 있는 경우 위원회 위촉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.

2)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함.

3)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고 운영 지원 및 심의 안건의 작성·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.

바.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(안 제8조)

1) 진료비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사건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.

2) 피해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보상의 결정 및 심의와 관련한 업무를 학교, 공공기관, 법인,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생 략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생 략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망위로금 등의 지급)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사망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
2.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
3.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(이하 “보상위원회”라 한다)의 결정을 통해 인정된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제3조(코로나19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) ①

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(이하 “피해보상청구서류”라 한다)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제

4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.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제4조(코로나19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)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진료비

가. 지급 기준: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. 다만,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
나. 신청기한: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

2. 간병비: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

3.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

가. 지급 기준

1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

2)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

3) 1) 및 2) 외의 장애인으로서 「국민연금법」, 「공무원연금법」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: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나. 신청기한: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

4.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

가. 지급 기준: 사망 당시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

나. 신청기한: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또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

5. 장제비: 30만원

제5조(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전문가”란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「약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1. 식품의약품안전처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,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,

백신안전성위원회,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등에서 백신 피해구제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자

2.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자

②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기관·단체의 장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·기관·단체의 장을 말한다.

1. 「의료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(이하 “대한의사협회”라 한다)

2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단체

3. 예방접종 및 피해보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

제6조(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 및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(이하 “재심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

않은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6. 법 제17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
②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④ 법 제10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은 재심위원회에 준용한다.

⑤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

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제7조(사무기구) ①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사무기구를 둔다.

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, 사무기구의 장은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1.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

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

서 시·도지사의 제청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

③ 질병관리청장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상위원회, 재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2. 보상위원회, 재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·검토 및 협의·조정
3. 보상과 관련된 조사·연구 및 사업의 지원
4. 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
5. 그 밖에 위원회 등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8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3항·제4항에 따른 보상(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보상으로 한정한다)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3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
 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5.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제9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보건소장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국가의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8374